



제 422회 국회 (임시회)
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 신설 및 환급 절차 등 근거 마련 〉
■ 김성원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7191호)

2025. 2.

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

전문위원 전완희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 신설 및 환급 절차 등 근거 마련(안 제2조의2 신설 등)	2

I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: 김성원의원 등 11인

나. 발 의 일: 2025. 1. 2.

다. 회 부 일: 2025. 1. 3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고,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는 7천원의 출국납부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승객이 항공권 발권 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출국하지 못하더라도 항공권에 포함되어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출국납부금 환급신청권 및 소멸시효, 소멸시효가 도과한 출국납부금의 관광진흥개발기금 귀속 근거, 출국납부금 환급신청권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 등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를 마련하여 출국납부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조의2 신설 등).

Ⅲ. 검토의견

1.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 신설 및 환급 절차 등 근거 마련

가. 개정안 요지

- 개정안은 출국납부금의 환불청구권을 신설하고, 소멸시효 및 기금 귀속 근거 등을 마련하며, 환급청구권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를 공항운영자에게 부여하려는 것임(안 제2조의2 신설 등).

나.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기금의 설치 및 재원) ① (생략)	제2조(기금의 설치 및 재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(財源)으로 조성한다.	②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제3항에 따른 <u>출국납부금</u>	3. ----- <u>출국납부금 및</u> <u>제2조의2제2항에 따라 귀속되는</u> <u>출국납부금</u>
4. 5. (생략)	4. 5. (현행과 같음)
③ ~ ⑦ (생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제2조의2(출국납부금의 환급 청구</u> <u>등) ① 출국 전 제2조제3항에</u> <u>따라 출국납부금을 납부하였으나</u>

출국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
공항운영자(「항공사업법」 제2조
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
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납부한
출국납부금에 대하여 환급을
청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출국납부금
환급청구권은 출국이 예정된
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
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,
공항운영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
출국납부금을 기금에 귀속하여야
한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항
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소멸
시효가 완성된 출국납부금을
기금에 귀속시키지 아니하면
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
할 수 있다.

④ 공항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
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문화
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
따라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을
가진 자에게 출국납부금의 환급을
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
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(납부금 부과·징수 업무의 위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·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·징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·징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2조(납부금 부과·징수 및 환급 업무의 위탁) ① -----

부과·징수의 업무, 제2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출국 납부금의 환급·환급 사전 통지 업무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부과·징수의 업무, 출국납부금의 환급·환급 사전 통지 업무-----
-----부과·징수의 업무, 출국납부금의 환급·환급 사전 통지 업무---

-----.

제13조의2(과태료) ① 공항운영자가 제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출국 납부금 환급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통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	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· 징수한다.
--	--

다. 검토의견

-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이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된 것으로,¹⁾ 출국납부금의 부과·징수 업무는 지방해양수산청장, 항만공사, 공항운영자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.²⁾
-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은 항공권 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을 항공권 구입 시 항공사에 함께 결제하게 되고, 탑승객 출국 후 공항운영자가 항공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수령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납부하며,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자가 선박 탑승 터미널에서 납부하고 이를 항만공사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다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.

1) 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」

제2조(기금의 설치 및 재원)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
2. 「관광진흥법」 제30조에 따른 납부금
3.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
4. 「관세법」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
5.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

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.

2) 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」

제12조(납부금 부과·징수 업무의 위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·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·징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·징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」

제22조(납부금 부과·징수 업무의 위탁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·징수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, 「항만공사법」에 따른 항만공사 및 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에게 각각 위탁한다.

- 그런데,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기 위하여 항공권을 구입한 탑승객이
항공권 취소 없이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공권 요금에 포함된
출국납부금을 환급받아야 하나, 항공권 취소·환불과 별개로
출국납부금만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
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.
- 이에 개정안은 출국납부금을 납부하였으나 출국하지 않은 사람이
기납부한 출국납부금에 대한 환급을 공항운영자에게 청구할 수
있도록 하고, 해당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며,
소멸시효가 완성된 출국납부금을 기금에 귀속하도록 하였음.
- 또한,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나기 전에
환급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공항
운영자에게 부여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
규정하였음.
- 이는 출국납부금의 납부 의무가 없어진 사람에게 보장되어야
할 환급청구권을 명시하고, 출국납부금의 부과·징수업무를 위탁받은
공항운영자가 환급 및 환급통지 등을 함께 수행하도록 함으로써,
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임.
- 다만, 현행법은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의 위탁 규정만 두고
있고, 해당 업무를 공항운영자가 위탁받아 수행한다는 내용은
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데, 개정안에서 출국납부금의 환급이
나 환급 사전통지 의무, 소멸시효가 완성된 출국납부금의 기금

귀속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탁자인 공항운영자가 수행하도록 바로 명시한 것이 법 체계상 적정한지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- 참고로, 출국납부금과 함께 BP tax³⁾로 분류되는 공항시설사용료에 대한 반환 등을 규정한 「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등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으므로,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들에 대한 유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절차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[유사 발의안 - 국토교통위원회 소관]

법률명 (의안번호)	주요내용(조항)	발의일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(2202744)	공항시설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청구권 신설 및 소멸시효 설정, 소멸시효 완성된 공항시설사용료의 공항회계(교통시설특별회계) 귀속, 항공업무 수행자에 대한 검사, 반환청구권의 사전 통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(제32조, 제32조의2, 제55조, 제69조)	'24. 8. 12.
교통시설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(2202745)	소멸시효가 공항·비행장·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공항계정에 귀속 (제6조)	'24. 8. 12.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(2205613)	공항시설사용료 반환청구권 신설 및 소멸시효 설정, 소멸시효 완성된 공항시설사용료의 국고 귀속, 반환청구권의 사전 통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(제32조의2, 제69조)	'24. 11. 15.

문 의 처

02)6788-5377

3) BP tax(Boarding Pass tax) = 출국납부금(문화체육관광부) + 공항시설사용료(국토교통부)